

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0. 10. 28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안영란 의원 외 5명(박재형, 김귀화, 이신자, 박정환, 조복희)
- 발의일자: 2020. 9. 23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0. 10. 28.)

2. 개정이유

- 각종 위원회의 원칙 및 설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,
- 위원의 위촉 시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및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원회 기본 원칙 및 설치 절차 신설(안 제1조의2, 안 제4조)
- 공모로 위촉되는 위원의 공모 방법 및 공고 내용 등의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- 위원회 회의내용이 규정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
- 위원회 정비이행계획표 작성 규정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검토 규정 신설(안 제14조 제2항 ~ 제3항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9. 23. ~ 10. 5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이영규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설치절차를 제시하여 설치·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, 위원의 공개모집과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, 위원회 활동이 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관리 및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안 제1조의2(기본원칙)은 제1조(목적)과 조문 간 의미가 중복되고, 안 제4조(설치절차)는 시행규칙 내지 내부지침으로 정할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,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